

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(안내공시)

1. 구분	확정 발행가액	
2. 주당 발행가액	보통주식(원)	4,695
	종류주식(원)	-
3.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	<p>(1) 1차 발행가액 : 신주배정기준일(2021년 01월 27일)전 제3거래일(2021년 01월 22일)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,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증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증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은 5%를 적용,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. 단,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,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.</p> <p>▶ 1차 발행가액 = [기준주가 × (1-할인율)] / [1+(증자비율) × 할인율]</p> <p>(2) 2차 발행가액 : 구주주 청약일(2021년 03월 08일) 전 제3거래일(2021년 03월 03일)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증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증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은 5%를 적용,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. 단, 호가단위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,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.</p> <p>▶ 2차 발행가액 = 기준주가 × [1 - 할인율]</p> <p>(3) 확정 발행가액: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. 단,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8조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30% 할인율을 적용하</p>	

	<p>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30%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. 단, 호가단위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,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.</p> <p>▶ 확정 발행가액 = Max{Min[1차 발행가액, 2차 발행가액],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70%}</p> <p>※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.</p>
	<p>※ 관련공시</p> <p><a href="#">2021-01-08 유상증자결정</a></p> <p><a href="#">2021-01-11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</a></p> <p><a href="#">2021-01-14 유상증자결정</a></p> <p><a href="#">2021-01-14 특수관계인의유상증자참여</a></p> <p><a href="#">2021-01-25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(안내공시)</a></p> <p><a href="#">2021-01-25 유상증자결정</a></p>